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동산 공시가격의 조사·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기능을 확대하여 공시가격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시가격 산정자료 보강(안 제9조)

- 공시가격의 정확성 개선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을 추가함

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지자체 검토기능 확대(안 제46조)

-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산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시·군·구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없 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법 제4조 전단에서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해당 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9조(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
9. ~ 11. (생략)	10. ~ 12.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제46조(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절차) ① (생략)	제46조(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u><신 설></u>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② ~ ④ (생략)	<u>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u>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연 락 처	(044) 201 - 3452